부처협의(안)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4. 7.

환 경 부

※ 담당 : 국토환경보전과 이규만서기관(☎2110-6704)

1. 개정이유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범위와 협의시기 등을 조정하여 현행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평가자료 작성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간소화 함으로써 사업자 부담경감 도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할 때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5, 안 제15조의2)

나. 국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명시함(안 제25조)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마.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7)

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7의2항)

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중 “당해”를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 및 당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을 “국가환경종합계획등과 환경성평가결과를”로 한다.

제15조의2제목중 “환경친화적계획기법”을 “환경성평가지도”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친화적”을 “국토에 대한 환경적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환경성 고려를 위한 사전협의) ①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는 정책·계획등의 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지구·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 개발사업 등을 수립·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측면에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계획등의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내 개발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유형,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검토서의 작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비서류(이하 “간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의견수렴)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하며 제시된 의견이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사전환경성검토협의·검토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입안단계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을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검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제25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협의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서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이의신청)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의6”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를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당해 검토서에 제시된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인용·생략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 ---------- ---------- ---------- ----------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 및 당해----------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 ---------- ---------- 국가환경종합계획등과 환경성평가결과를--.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제15조의2(환경성평가지도등의 작성·보급) ①---------- ---------- ---------- ----------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국토에 대한 환경적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 환경친화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성 고려를 위한 사전협의) ①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②사전환경성검토는 정책·계획 등의 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지구·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 개발사업 등을 수립·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측면에서 대안의 설정·분석등 평가를 통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큰 영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 및 저감방안 등을 검토·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신 설>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정책·계획 등의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내 개발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유형,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검토서의 작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비서류(이하 “간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4(의견수렴)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하며 제시된 의견이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5(사전환경성검토협의·검토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입안단계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을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검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제25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 및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6(협의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서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해로

	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7(이의신청)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의6----------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당해 검토서에 제시된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

	향평가시 인용·생략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연 락 처	(02) 2110 - 6703~4